

출석인정 내규

출석인정 내규

- 담당 : [학사팀](#)
- 개정일 : 2018.02.19

□

목차

- [1 제1조\(목적\)](#)
- [2 제2조\(허용 범위\)](#)
- [3 제3조\(신청 시기 및 방법\)](#)
- [4 제4조\(출석인정\)](#)
- [5 제5조\(관리\)](#)
- [6 제6조\(기타사항\)](#)
- [7 부칙](#)

제1조(목적)

이 내규는 학칙 제35조 3항 및 학칙 시행세칙 제23조 2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허용 범위)

본교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,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신청 시기 및 방법)

- ①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<붙임-1>공결확인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.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.
- ② 소속학과의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는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출석인정)

-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.
-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.

출석불가 인정사유	인정기간 (공휴일포함)	원격강의		증빙서류	
		실시간화상 강의	온라인 녹화강의		
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연판정검사 (의무복무 기간 제외)	해당일	녹화영상 100% 시청 시 출석인 정	X	인정	관련 통지서
의무복무대체소집 (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 는 소집 절차)	해당일	녹화영상 101% 시청 시 출석인 정	X	인정	관련 통지서
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 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	해당기간 (최대4주까지 인 정하며, 4주 초과 시에는 병가휴학 실시)	인정	인정	인정	공통 :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
조·부모(외가, 처가포함), 형제자매, 배우자 및 자녀 의 사망	7일 이내	인정	인정	인정	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
여학생의 생리	해당 없음	X	X	인정	없음
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	해당 기간	인정	인정	인정	없음(단,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 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)
체육특기자 대회참가 (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 가한 자)	해당 기간	인정	인정	인정	일정통보서 등
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	해당 기간	인정	인정	인정	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
COVID19 백신 접종	접종 당일	인정	인정	인정	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
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(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 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 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 능)	접종 익일(1일) 해당기간	인정	인정	인정	백신접종완료증명서, 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(별첨 서식 이용) 등 관련 증빙서류 (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, 이상반응내역을 기 술한 사유서(별첨 서식) 등)

제5조(관리)

①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 확인후 대학장 허가를 득하여 승인처리 한다.

제6조(기타사항)

-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(총 수업일수의 2분의 1)초과할 수 없으며,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조(학업성적)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 할 수 있다.
- ②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.
- ③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.
- ④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,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4조(출석인정)과 제6조(기타사항) 1항은 승일일 부터 시행하며, 제6조(기타사항) 4항은 2019 학년도 3월부터 조기취업자도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의무출석을 적용한다.